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부상 시 휴직기간 확대〉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1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3.
3. 회부연월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업무 또는 활동 등을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2조의2(공상공무원의 휴직기간)</u> <u>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u> <u>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업무 또는</u> <u>활동 등을 수행하다가 제72조제</u> <u>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u> <u>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u> <u>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u> <u>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u> <u>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u> <u>다.</u>

2. 검토의견

현행법 제72조제1호¹⁾ 본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바,²⁾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1)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 10. (생략)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됨.

개정안은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중에서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3)에

-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따른 직무·업무 또는 활동 등(이하 “위험직무”)을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특례적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최근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⁵⁾⁶⁾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2024년 2월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8. 14. 시행), 2024년 3월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411호, 2024. 8. 14. 시행)

5) 「경찰공무원법」

제29조(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①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외에 다른 직역의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고,⁷⁾ 이들 직역의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직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6)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외에도 대통령경호처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 교도관,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 어업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관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밖에 공무원이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구난 업무,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 방지, 산불 진화, 국외에서의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 위난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29조제1항과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다만, 휴직 기간을 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2조에서 해당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업무 또는 활동 등을 수행하다가”라는 문언은 직무·업무 또는 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 등의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